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387
----------	------

2023년 12월 22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10월 16일 김영옥 의원(찬성 10명)
2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3. 상정일자 : 제321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3년 12월 19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영옥 의원)

1. 제안이유

-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.59명에 그치는 등 심화되는 저출생 상황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, 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, 조례마다 관련 용어 정의가 상이하고 다른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가 불분명하여 혼선이 초래될 수 있음.
- 이에 “다자녀 가족”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, 관련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

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다자녀 가족”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(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)으로 정의함 (안 제2조제2호).
-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(안 제2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- 입법예고 (2023.10.26.~10.30.) 결과 : 의견없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“다자녀 가족” 용어 정비를 통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출산 및 양육 지원 관련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함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다자녀 가족 및 다둥이 행복카드 정의규정 변경 (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)

- 안 제2조제2호는 다자녀 가족 정의 규정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 중에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다자녀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 <u>다자녀가족</u> ”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<u>가족</u> 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“ <u>다자녀 가족</u> ”이란 ----- ----- ----- <u>가족(다만 자녀 중</u>

	<u>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)을 ---.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"다둥이 행복카드"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<u>다자녀가족</u> (다만, 막내가 18세 이하)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.	4. ----- ----- <u>다자녀가족</u> ----- ----- -.
5. ~ 8. (생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
- 현행 조례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 정의(동 조례 제2조제4호)에만 다자녀 가족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, 다자녀 가족 정의(동 조례 제2조제2호)에는 자녀 연령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.
- 따라서 안 제2조제4호는 '다자녀 가족' 정의 규정에 자녀 연령 기준을 포함하여 동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자녀 가족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써 타당하다고 보여짐.
- 다만 다자녀 가족 관련해 법률상 정의 규정은 별도 없지만 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1)에 따라 다자녀 가족을 정의하고 있어 동 조례에서 다자녀가족을 별도 정의하는 것의 입법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1) 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다자녀 가족"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.

□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2조의2 신설)

- 안 제2조의2는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, 이 조례를 따른다고 명시하기 위함임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신 설>	<u>제2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

- 동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제1항2)에 따라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시장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함으로써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.
- 따라서 동 조례는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해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별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, 별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동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.
- 또한 출산 및 양육 관련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바, 다

2)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동 조례와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동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는 가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자녀 연령에 대한 기준은 없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다자녀 가족 용어 정비를 통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써 입법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.
- 또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영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8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발 의 자: 김영옥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남창진,
박성연, 서상열, 신동원,
유만희, 이성배, 이종배,
최윤희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.59명에 그치는 등 심화되는 저출생 상황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, 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, 조례마다 관련 용어 정의가 상이하고 다른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가 불분명하여 혼선이 초래될 수 있음.
- 이에 “다자녀 가족”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, 관련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다자녀 가족”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(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)로 정의함 (안 제2조제2호).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(안 제2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“다자녀가족”이란”을 ““다자녀 가족”이란”으로 하고, “가족을”을 “가족(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)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다자녀가족(다만, 막내가 18세 이하)”을 “다자녀 가족”으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3조제1호 중 “다자녀가정”을 “다자녀 가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" <u>다자녀가족</u> "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<u>가족</u> 을 말한다. 3. (생 략) 4. " <u>다둥이 행복카드</u> "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<u>다자녀가족</u> (다만, 막내가 18세 이하)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. 5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" <u>다자녀 가족</u> "이란 ----- ----- --- <u>가족</u> (다만 자녀 중 한 명이 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는다)을 ---.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다자녀 가족</u> --- ----- -----. 5. ~ 8. (현행과 같음) <u>제2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</u>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13조(포상)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. 1. <u>다자녀가정</u> 중 모범가정 2. ~ 4. (생 략)	제13조(포상) ----- ----- -----. 1. <u>다자녀 가족</u>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

문 서 번 호

2023101600000032

비 대 상 사 유 서

요 청 인 : 김영옥 의원

담 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손제승 주무관

접 수 일 : 2023.10.16.

회 신 일 : 2023.10.18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(정의) “다자녀 가족”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, 제2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관련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손제승
	☎ 02-2180-7954
	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